

## 변 론 분 리 신 청

사 건 2000고단000호 00

위 ○○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□□□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어 소재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, 구속중의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

○ ○ 지 방 법 원 형사 ○ 단독 귀중

			or.kul to	<b>★</b> 대한법률구조공단
제출기관	사건계속 법원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300조	
신 청 인	·검사 ·피고인 또는 변호인	제출부수	신청서 1부	
불복절차 및 기간	(항고불허 : 형사소송법	를 403조)		